

檢視制度의 實效性 確保에 관한 小考

윤 성 철*

I. 서 언	2. 檢視關聯 機構 및 制度 新設
II.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限界	3. 檢視制度의 法的 改善
1. 實務的 限界	4. 法醫學 教育 및 法醫學者 養成體 系 改善
2. 制度的 限界	5. 現場鑑識分野의 專門化
3. 法的 限界	IV. 결 론
III. 檢視制度의 改善을 위한 提言	
1. 現行 檢視制度의 範圍內에서 改善	

I. 서 언

21세기 복지국가는 국민의 출생, 건강유지, 의·식·주 및 노인 문제 등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사망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제도의 운영목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질병 등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범죄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잃었을 경우에 그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죽음이 가져오는 개인·가족·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정의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법치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국민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원인이 국가적인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사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연구관

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 죽음에 대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국가적 의무와 노력에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 체계에 맞는 효율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 즉,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비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며,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수사 및 사법작용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검이 실시되어 행정부검은 원시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지장을 주며 의학발전 및 교육에 허점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법의학자가 아닌 일반의가 검안을 담당하여 우수한 전문가도 배출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뜻있는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현행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검시제도의 운용상 한계를 살펴보고, 검시제도의 신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限界

1. 實務的 限界

우리나라는 변사체에 대한 조사가 지휘, 집행, 실행, 부검 여부 판단의 결정에서 서로 다른 직책이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분산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보다는 검시(檢視)에 관여하는 다양한 직종들이 갖고 있는 법의학적 지식과 전문적 교육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검시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류를 범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1) 現場鑑識과 檢案時 法醫學者 不在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나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그 흔적을 반드시 남긴다.’는 Locard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¹⁾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이다.

이와 같이 범죄의 흔적과 변사체가 있는 사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감식과 변사체 검시’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동시에 출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감식 전문가와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감식에서 사망에 관련된 기본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일심에서 유죄판결이었으나 항소심 중에 진범이 밝혀짐으로써 현장감식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김순경 사건’, 초기에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사후변화를 간과하여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역시 사망시각을 추정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듀스 김○○ 사망사건²⁾

1) 은대중, 초등수사에 관한 연구 -변사사건을 중심으로-, 전투발전, 육군교육사령부, 1998. 5, 180면

2)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된 것인 바,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노 1268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 살해 사건에서, 사망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살해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황산마그네슘 3.5g과 졸레틸 1병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 주장의 살해 장소나 살해 방법 등도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듀스’멤버 살해혐의 ; 김○○씨 무죄 확정, 조선일보, 1998. 2. 26.[사회], “대법원 형사 1부는 25일 95년 랩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씨 애인 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등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초동수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변사자의 사망 시각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사후변화를 사건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사건 현장이 훼손되거나 변사체가 옮겨진 상태에서 확인·수집된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데 혼선만 초래한다. 시체에서 관찰되는 사후변화를 발견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변경됨이 없이 사건현장에서 법의학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수집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검사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사건현장과 변사체에 대한 조사를 법의학적 지식이 매우 제한적인 경찰과 경찰공의가 담당하고, 법의학 전문 의사는 사건현장조사에서 배제된 채 단지 부검만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사건현장에 현장감식 전문팀과 법의학자가 공동으로 검시에 참여하

‘듀스’ 김○○ 사건 개요-쟁점 약물치사량-사망시각이 열쇠, 조선일보, 1996. 11. 7. [사회]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사망 당시 23세) 피살사건과 관련, 피고인 김○○ 양(여, 26)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 사건 개요

사건상황 사망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95년 11월 20일 오전 7시5분. 김씨는 전날 모 방송국 쇼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밤 10시쯤 숙소에 들어왔으며, 다음날 새벽 1시반쯤 거실에서 잠들었다. 당시 45평 규모의 현장에는 김씨 외에 매니저, 미국인 흑인남녀 2명을 포함한 백댄싱팀 6명, 김○○양 등 모두 9명이 있었다. 그중 김양은 김씨가 발견되기 전인 새벽 3시40분쯤 호텔을 나섰고, 동료들은 3개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서부지청과 서울 서부경찰서는 숨진 김씨의 오른쪽 팔뚝에서 주사바늘 자국 27곳을 찾아 낸데 이어 사건발생 19일 만인 12월8일 김양을 『김씨의 팔뚝에 동물용 수면제 졸라제팜 1대를 주사해 잠들게 한 뒤 다시 황산마그네슘 용액을 투여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안○○ 검사는 『김양이 사건 직전 반포본동의 b동물병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물용 수면제 졸라제팜 5mg과 황산마그네슘 7g, 주사기 2개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양이 범행 열흘 후 동물병원장 배모씨(31)를 다시 찾아가 「약품구입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김양은 구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졸라제팜은 애견을 안락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날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양은 또 『호텔방을 나올 때까지 김씨는 아무 이상없이 자고 있었고 주사바늘 자국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주요 쟁점

김양에게 혐의를 둔 근거는 ①김양이 숨진 김씨와 함께 거실에 있었으며 ②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수면제와 같은 약품을 김양이 구입한 점 ③김씨의 사망시각이 사건당일 새벽 1시반~2시 사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 등 세 가지.

그러나 김양 가족과 변호사는 ④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고, ⑤신고 또한 사망시각(경찰주장 새벽 1시반~2시)보다 무려 6시간 늦은 7시5분쯤 이뤄졌으며 ⑥당초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결론과 달리 호텔 객실 열쇠 26개중 무려 19개나 분실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⑦숨진 김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 졸라제팜과 황산마그네슘의 양이 절대 치사량이 될 수 없고 ⑧사망시각 추정 역시 잘못됐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웠다.

여 법의학적 지식 및 이론과 현장경험의 접목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경찰의 과학 수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2) 檢視過程에서의 未洽한 情報交流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을 결정하고 시체 소견을 해석하는 것은 검안의나 부검을 담당하는 의사가, 사망의 종류와 검시 조사에 대한 해석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시체만 보거나 부검실에 옮겨진 시체만 부검하여 사인을 진단하거나 시체 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경우에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검안의·부검의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기피하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마치 임상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병명을 진단하려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경찰도 시체의 소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병명을 정확한 진단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비전문적이거나 검시 조사를 하여 검찰에 넘기고, 검안의나 부검의 역시 비전문적이거나 시체를 검안 또는 부검하여 시체에서 발견한 소견을 검찰이나 경찰에 제시하게 된다. 결국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검시 책임자인 검찰이 검시의 결론을 내려야 하며, 사건이 재판에 이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넘겨받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검찰이나 법원에 이러한 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판단의 기초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후일 문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즉, 경찰은 ‘검안·부검소견이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가 어떻게 되가는지도 모르는 데 가능성만 가지고 내가 왜 쓸데 없는 책임을 지나’ 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해서’, 법원은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

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경찰은 ‘검안·부검의가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언제 확실히 그렇다고 하였는가’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의사의 전문적 견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아니 책임을 지거나 지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³⁾

(3) 現實性없는 檢案·剖檢 手數料

부검수수료는 사체 1구당 20만원, 검안비는 1구당 3만원이 경찰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 지급하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무료로 부검을 의뢰하고 있다. 이는 부검의들이 부검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분소에 집중되어 부검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의과대학에 따라서는 적절한 수수료의 지급이 보장된다면 법의학교실을 신설하거나 보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예산 문제가 부검제도의 발전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⁴⁾

이와 같이 현실성 없는 검안·검시비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직업적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경찰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검안의 경우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또한 검안 의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한 후에 해당 병원의 의사로 하여금 사건 현장을 보지 못한 채 검안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검이 예상되는 변사체에 대하여는 시체검안서가 형식적 첨부서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4) 檢視主體 및 關與者의 專門性 不足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살인 등 강력 사건 수사의 출발점으로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인의 이목을 끈 몇 건의 살인사

3) 강신몽, 검시제도의 의학적 검토, 인권과 정의 244호, 43면.

4) 이문호,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 검찰, 대검찰청, 2000.12, 46면.

건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검시로 인하여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구속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검사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이른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검시위주제도는 비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며,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저하되고, 수사 및 사법작용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검이 실시되어 행정부검은 원시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지장을 주며 의학 발전 및 교육에 허점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주로 일반의사가 검안을 담당하여 우수한 전문가도 배출할 수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법의학의 전문지식 문제만 보더라도 의사 쪽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다면 그 상당부분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량, 잦은 인사이동과 전담 업무의 변동 등으로 변사체 검시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간 약 35,000건씩 발생하는 모든 변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간(1999년~2003년) 우리나라 변사사건 발생 및 검사 직접검시 현황을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表 1> 變死體 直接檢視 現⁵⁾

구분 년도	변사발생인원(명)	검사 직접검시인원(명)	검사 직접검시율(%)
1999	35,081	3,975	11.33
2000	35,314	4,149	11.75
2001	33,869	5,286	15.16
2002	34,016	5,795	17.56
2003	36,659	6,186	16.87

5) <http://www.sppo.go.kr/jsp/act/Act0303.js> ;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 실적분석 및 성과에서 발췌.

위 <表 1>과 같이 매년 변사사건 발생인원은 연간 약 35,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경우는 약 10% 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변사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경찰의 변사 발생보고를 받고, 그 발생보고를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검시지휘를 내려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집행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의 정확성은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 중요함이 부각된다. 그러나 경찰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에는 발견 일시, 발견 장소, 발견자의 인적사항, 변사자의 인적사항, 사인, 사망추정연월일, 사체의 상황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보고내용만으로 타살혐의 유무 또는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생기고, 또한 그 보고내용 기재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들도 검시에 대하여 체계적인 감식·법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검시를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사인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대부분 현지 의사의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데 시체검안을 한 의사들의 대부분이 법의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어서, 사체의 현상, 사망장소의 상황, 유류품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추정되는 사인과 그 선행사인을 제대로 구분하여 시체검안서에 나타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는 의사들이 시체검안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사인불명(死因不明)’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나, 사망의 결과일 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심폐정지(心肺停止)⁶⁾’라고 사인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절차의 번잡으로 검시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물론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너무 타성적으로 변사사건 처리를 해온 탓도 있다고 생각된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변사체 발생보고가 있으면 검사가 막연히 ‘사체를 검시하여 타살혐의 없으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할 것’이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이 검시행위의 전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타살혐의의

6) 사람이 사망하면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망의 결과임에도 이를 사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는 사실상 사인불명으로 간주된다.

판단은 검안의, 경찰, 119구급대에 맡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위장된 범죄의 경우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연사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시 제도를 담보하는 검사는 실제로 검시 및 판단행위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 행위를 하는 검안의, 경찰, 119구급대는 판단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범죄혐의 판단을 내림에 있어 비전문가인 검사가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은 처음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인 법의학자가 처음부터 간여하였다면 마약에 의한 중독사로 판단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였을 사건이 비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살인사건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법의학자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 법의학자는 수사기관이 준 정보만을 토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의학 이해 못하는 법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⁷⁾

이러한 면을 종합하여 볼 때, 어쩌면 검안을 하는 의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경찰관과 검사에 대한 검시 및 법의학 교육 소홀도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경찰수사지휘과정 등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변사체 검시라는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의 우대 등 사기 진작책과 충분한 수사비의 지급, 과학수사장비의 구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사체 검시 및 강력사건 현장 수사·감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 制度的 限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법률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감찰의 제도를 실시하여 사법검시 위주에서 행정검시 우선으로 전환하였다. 변사자의 검안을 법의학 지식이 있는 감찰의로 하여금 검안하게 규정하고, 또한 감찰의가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 보건정책, 민사적 책임, 의학 발전 및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7) 검시제도의 법적 검토 : 변협·의협 공동세미나, 법의학의 현상황에 대한 법적 비판, 법률신문 2564호, 1997. 1, 15면.

이와같이 각 국가들은 검시 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검시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건 수사, 현장 조사, 검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국가적인 감시와 억울한 죽음을 없애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시에 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장하는 행정부서나 학계·정계에서 제도적으로 검시를 개선·보완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1) 捜査와 剖檢의 共助 未洽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수사와 부검이 별개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결정하고 시체의 소견을 해석하여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부검의사의 몫이고, 현장에 대한 검시조사와 증거물의 수집은 수사를 담당하는 감식전담 경찰의 몫이다. 그러나 현 실정은 부검의사가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사건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부검실에 옮겨진 시체만 부검하기 때문에 시체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치료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병명을 진단하려는 경우와 같다. 경찰도 시체의 소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서로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 하긴 했으나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검만 하면 수사에 필요한 죽음에 관한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현장 상황이나 사망력에 대한 정보 없이는 부검을 하고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범죄현장은 수사의 시작이요 끝이다.’ 라는 수사 격언이 있듯이 검시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변사현장은 검시의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사건현장은 죽음의 진실을 풀어내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검시는 제도적으로 수사초기에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사건현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⁸⁾

8) 황적준,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8면.

(2) 法醫學 專門人力 養成制度 不實

검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법의병리학 전문의사(forensic pathologist)이지만 법치의학 및 법정신의를 전공한 의사도 필요하다. 직종을 확대하면 법인류학자, 법독물학자, 법유전학자, 생물학자, 법곤충학자, 식물학자 등이 과학적 범죄 수사를 위해 요구되고, 이 외에도 현장 감식에 필요한 탄도, 지문, 미세증거(trace evidence), 섬유, 모발, 음성, 화재, 교통공학 등 감식학(criminalistics)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가 필요하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부검을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 또는 법의병리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데 비해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일반의사 누구에게나 부검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몇 개의 국가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시체는 반드시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범해부는 검찰을 통하여 법의학 교수에게 의뢰하고, 행정해부는 검찰의가 맡고 있다. 검찰의의 자격을 위한 특별한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에서 2년 이상 수련 받은 경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와 법률 체계와 교육제도 면에서 비슷한 점이 적지 않지만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실을 개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된 검찰의무원은 검시·검안·부검 등 실무를 담당하고, 검찰의무원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은 검시·검안·부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통해 얻어진 증거물, 시체, 범죄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법의학 전 분야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⁹⁾.

또한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교육할 기관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의병리학 전문의사의 양성은 오로지 의과대학에 맡겨진 상태이며, 아래 <表 2>와 같이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에 법의학교실을 개설하여 전임교원이 있는 의과대학은 7개교에 불과하고, 법의학 교과목에 대한 강좌는 41개 의과대학 중 37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4개 대학은 교과목

9) 황적준, 앞의 보고서, 28-29면.

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학점은 강의시간 수에 따라 1~2학점이 대부분이
나, 0.5학점인 대학도 5개교나 되고, 41개 대학 공히 실습시간은 전무하다.

<表 2> 全國 醫科大學 法醫學 講義 및 專任教員 現況(2002. 5月 現在)¹⁰⁾

의과대학	강의 시간수	학점	전임 교원	법의학교실 개설 유무	비고
가천	16	1	-	-	-
가톨릭	16	1	1	○	강신몽(법의학)
강원	16	1	-	-	-
건국	16	1	-	-	박의우(법의병리)-병리학교실 소속
건양	16	1	-	-	-
경북	20	1	2	○	곽정식·채종민(법의병리) 이상한(법의병리)-병리학교실 소속
경상	6	-	-	-	-
경희	-	-	-	-	-
계명	16	1	-	△	직제만 있음
고려	30	2	1	○	황적준(법의학·법의병리·법의혈청학)
고신	24	1.5	-	-	-
관동	18	1	-	-	-
단국	9	0.5	-	-	-
대구가톨릭	10	0.5	-	-	-
동국	16	1	-	-	-
동아	64	2	-	-	-
부산	16	1	-	-	-
서남	18	1	-	-	-
서울	16	1	3	○	이정빈·이윤성(법의병리), 이승덕(법의학)
성균관	-	-	-	-	-
순천향	10	1	-	-	-
아주	16	1	-	-	-
연세	14	1	1	○ (법의학과)	신경진(법의혈청학)
연세원주	16	1	-	-	-

10) “의과대학교육현황 제12집,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2002”에서 각 대학별 법의학 강좌·
법의학교실 설치여부, 전임교원 현황·세부전공 등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영남	10	1	-	-	-
울산	-	-	-	-	-
원광	18	1	-	-	-
을지	-	-	-	-	-
이화	16	1	-	-	-
인제	16	1	-	-	-
인하	10	0.5	-	-	-
전남	16	1	1	○	박종태(법의학)
전북	16	1	1	○	최호열(법의병리)
제주	15	1	-	-	강현욱(법의병리)-병리학교실 소속
조선	14	0.5	-	-	-
중앙	16	1	-	-	-
충남	16	0.5	-	-	-
충북	20	1	-	-	-
포천중문	20	1	-	-	-
한림	18	1	-	-	-
한양	57	1	-	-	-

그러나 실제로 부검을 포함하여 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분소가 없는 경북 지역의 경북의대 법의학 교실뿐이다.¹¹⁾ 나머지 의과대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 내내 한건의 부검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법의학 교육에 필요한 ‘시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인류학자, 법독물학자, 법유전학자, 생물학자, 법곤충학자, 식물학자, 그리고 과학수사에 요구되는 탄도, 지문, 미세증거(trace evidence), 섬유, 모발, 음성, 화재, 교통공학 등 현장 감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미국에서는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을 해부병리학의 세부전문(subspeciality) 과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의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여야 검시업무를 할 수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해부병리학이나 임상병리학 수련 과정을 마치고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의사

11) 경북지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가 없기 때문에 경북의대가 부검을 전담하고 있다.

가 ‘미국병리위원회(American Board of Pathology)’ 또는 ‘졸업 후 의학교육 연계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1~2년간 법의병리학 수련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하여야 법의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다. 따라서 법의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검시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의관사무소(medical examiner's office)에서 법의병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법의학 전문가를 의과대학에서 양성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검시를 주 업무로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조차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¹²⁾

(3) 不合理的 死亡申告制度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망할 경우 흔히 변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임상 의사가 유가족이나 관련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교부받은 유가족이 직접 행정관청(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등)에 사망 신고를 한다. 2001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은 약 24만 3천명이고,¹³⁾ 그 중에 외인(外因)에 의한 사망(즉, 변사자)은 전체 사망의 34,020명(14%) 정도이다. 또 2001년에 수사 대상이 된 변사자는 26,088명이고, 살인 사건 피해자는 1,051명이다.¹⁴⁾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 지역에서 검시의 대상이 되는 죽음은 전체 사망자의 15~40%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검시를 해야 할 죽음을 최소 15%라고 하더라도 2001년 전체 사망자 중 36,450명은 변사체이고, 2001년 통계청 발표에서 변사자는 34,020명이다. 그러나 2001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변사자는 26,088명으로 8,000명 정도가 검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법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는 임상 의사의 사인에 대한 판단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병리 전문 의사가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욱이 ‘인우증명서’에 의한 사망 확인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도서·벽지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유가족이나 이웃(특히, 동장)의 증명에 의한 사망원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2) 황적준, 앞의 보고서, 28-30면.

13)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2001.

14) 범죄분석, 경찰청, 2001.

비록 적은 수의 죽음일지라도 타살이 병사 또는 사고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어렵다.¹⁵⁾

한 논문¹⁶⁾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연간 특정구의 총 변사자수를 집계한 통계자료를 해당 관계기관을 통하여 알아보았지만 집계된 것이 없고, 다만 연간 구별 총 사망자수(총 변사자수+총 병사자수)만 각 구청별로 자료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자료의 부검율을 산출한 결과 6년간 2개구 평균 897명(75.0%)이었고 부검을 하지 않고 검안만 하고 처리한 행려처리율은 556명(25.0%)으로써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명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총사망자들에 대하여는 얼마만큼이 병으로 사망하였는지 또는 변사하였는지 그리고 변사라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시체가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法醫學 專攻醫師 管理制度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검시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이고, 그 외에 7개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이 검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을 갖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1년에 시행한 부검은 서울 본소가 2,709건, 중부 분소가 488건, 서부 분소 660건, 남부 분소가 482건으로 총 4,399건이고,¹⁷⁾ 7개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과 경찰공의가 담당할 부검을 모두 합하여도 우리나라 전체 부검 건수는 6,000건을 넘지 못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변사자 중에서 부검을 하는 경우는 33~66% 정도로서 이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8,600~24,000건의 부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검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는 변사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6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부검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40곳에 불과하다.

15) 황적준, 앞의 보고서, 30면.

16) 백형순, 우리나라 검시행정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6면.

1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2, 589면.

우리나라에는 검시 전문의를 양성하는 제도가 전무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생이 졸업 후에 검시를 평생의 업으로 하기에는 그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한 업무의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봉급수준이나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10명 중 9명이 포기하고 마는 실정이다.¹⁸⁾

3. 法的 限界

(1) 檢視對象 死亡의 種類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시(檢視)에 관련되는 법규는 ‘형사소송법’, ‘의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이다. 그러나 어느 법규에도 변사 신고나 법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망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제222조 ①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한 검시 책임자를,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3~36조)은 변사자 보고·현장 보존·증거물 및 시체검안서 확보 등 검시 절차를, 의료법(제24조)은 변사체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2조 ①항)에는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검시 대상이 되는 변사의 종류 - 즉, 사망의 종류 -를 명시한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변사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¹⁹⁾ 부검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검시(檢視)의 범위는 반드시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직업병이나 산재로 인한 사망, 보험과 관련된 죽음 등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죽음은 흔히 단순 변사나 사고사로 처리하여 부검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그 사망 원인의 규명이 어려워 결국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

(2) 醫療法上 檢案

변사체의 사인규명을 위해 사건현장에서 변사체의 조직이나 체액을 이

18) 강신몽,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 수사연구, 1996. 8, 46면.

19)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조차도 변사(變死)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용해 사망시간, 원인 등을 밝혀내는 것이 檢案이다. 현장검안은 개업을 했거나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상대로 경찰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1월 국과수에 대한 경찰청 행정종합감사에서 대전 중부분소 소속 의사들이 현장 검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 18조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의관들은 그같은 검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경찰청의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지난 2004년 1월 5일 “변사체 발생시 국과수 소속의사가 검안서를 작성, 교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입장은 “국과수 의사들이 변사체 검안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과 현장검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업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즉, 검시관련 전문가인 법의학자가 의료법의 규정 때문에 검안을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검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건해결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의사들의 현장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과수 의사들은 법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업의들의 검안과는 접근방법부터 다르므로, 초동수사에서부터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과수 소속의사들의 현장검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屍體解剖保存法上 剖檢

우리나라의 시체해부 보존법(제2조1항)에는 시체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사부장관이 적당하다고 허가한 자가 시체해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당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 시체해부보존법 제6조, 제7조에 의한 해부의뢰 시 의사의 자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사라면 누구나 해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는 법의학적 검사와 판단 능력을 갖

20) ‘국과수 현장검안’ 경찰이 막아, 경향신문, 2004. 2. 19.

춘 법의병리학을 전공한 의사가 부족하다.²¹⁾ 따라서 부검을 의뢰하거나 명령하는 행정당국, 검찰 및 법관 나름대로 부검자격에 대한 전문성의 요구나 자격요건에 대한 자각과 재고가 없는 한 우리나라 검시 특히 부검에 있어서 의사의 자질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

Ⅲ. 檢視制度의 改善을 위한 提言

검시제도는 현대국가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시제도는 실종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①의혹이 있는 죽음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시관련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②의과대학의 법의학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가 병사와 외인사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③검찰이나 사법경찰관, 판사가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검시과정을 수행하고, ④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여 법의학적 심판이 수사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함으로써 검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학계나 실무자들이 수없이 제기하였고, 그 개선방안도 계속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검시의 책임자인 검찰이나 검시를 집행하는 경찰, 그리고 검시 실무를 담당하는 법의학 전공자들은 각자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사이에 우리나라 검시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져가고 있다.

향후 한국의 검시제도의 개선은 한국의 법체계에 부합하며 재정적 부담 및 국민정서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선방안으로는 검찰 또는 경찰 내에 법의전문의를 두자는 견해,²²⁾ 검찰과 경찰에 법의조사관을 두자는

21) 전국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법학과 설치대학은 7개 대학이며, 그 곳에 종사하는 법의학 교수는 10명(법의혈청학 전공 1명 포함)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검시전문인력은 법의관 18명, 공중보건의 9명 등 27명이다.

22)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http://org.catholic.or.kr/chrc/summary.htm>.

견해,²³⁾ 공중보건의를 범의조사관으로 활용하자는 견해,²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확대설치하자는 견해,²⁵⁾ 경찰공의를 활성화하자는 견해²⁶⁾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방안들은 일견 검시관여자의 전문성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의학은 의학과 법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학의 특수분야이며 결코 범의학에 훈련받지 못한 일반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²⁷⁾

결국, 검시제도의 개선은 검시 관련 이해 기관의 의견 조정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의 여건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 검시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검시제도 종사자에 대한 양성·관리제도, 검시관련 기구 신설, 검시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現行 檢視制度의 範圍內에서 改善

(1) 現場鑑識要員·法醫學者 共同臨場 制度化

2004년 4월초 범의학자 한길로 박사는 “응급실 당직 의사가 주로 작성한 시신 검안서는 「미상」 투성이일 때가 많았고 심지어 현장 사진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술회하면서, 변사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검만으로는 사인규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결국 동료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안을 해야겠다.”고 선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떠나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범의학 전문기관인 서울법의학원·연구소를 개원하였다. 현재 서초·강남·용산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변사현장에 직접 입장하여 현장검안을 하고 있는 그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

23)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http://org.catholic.or.kr/chrc/qunda/examiner/htm>.

24) 김재선. 검시제도에 관한 연구-사법검시를 중심으로-. 배제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7면.

25) 김재선. 앞의 논문. 42면.

26) 김재선. 앞의 논문. 40면.

27) 임규옥 외,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 경북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실, 2003, 12-13면.

정답은 현장에 있다...죽음에 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가족과 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의문만 잔뜩 남게 되는데 서울에서 한 해 발생하는 변사사건 약 4,000건 중 제대로 해결되는 것은 1,000여건에 불과해요. 제 연구소가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죽음의 영역을 돌보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²⁸⁾라고 하였듯이 사건발생시 법의학자가 공동임장하여 변사현장을 보는 것은 자칫 정답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개연성이 농후한 변사사건들을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도 의문사 사건을 발생시킨 요인을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⁹⁾ 변사자 또는 의문사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물론이고,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시가 없어서 사망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 제3호 신호수 사건과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은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부검의사의 부검감정서를 신뢰할 수 없고,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부검을 하였으나 부검의사가 사건현장조사에 공동 임장하지 않아 사건과 관련된 정황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부검감정서 자체를 불신한 이유라고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에서 검시와 관련된 상황<表 3>을 보면 법의전문회에 의한 검안은 1건에 불과하고, 부검도 상당수 법의전문회가 아닌 일반의가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 3> 疑問死 事件의 檢視 現況³⁰⁾

담당과	검시방법	수	검시의사		검시결과 위원회 수용 여부		
			전문가	일반의	수용	부분수용	부정
조사1과	검안	3		3	1	1	1
	부검	8	8		1	7	
조사2과	검안	13		13	7	5	1
	부검	14	8	6	8	3	3

28) ‘죽음의 알리바이를 본다.’ 한국일보 2004. 4. 30.

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1차 1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312면.

3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1차 1권, 313면.

조사3과	검안	13	1	12	7	4	2
	부검	15	11	4	11	4	
특조과	검안	5		5	1	2	2
	부검	7	3	4	3		4
합계		78	31	47	39	26	13
※ 전체 85사건 가운데 실종사건과 각하 또는 취하한 사건 7건을 제외하였고, 유골로 발견된 2건의 사례는 포함하였음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장감식 요원과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사건현장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체 조사만큼은 법의학 전공 의사의 판단과 도움을 받았다면 최종질 사건과 같은 의문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학 실무·이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찰공의나 일본처럼 형사조사관(刑事調査官)을 양성하여 사건현장에 공동 입장하는 제도를 확립한다면, 첫째, 현장 감식전문 경찰관은 현장증거물 수집과 현장분석에 전념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둘째, 공동 입장한 법의학 전공 의사가 부검에 참여하여 사건현장에서 파악한 사후변화를 부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망시간 추정, 정확한 사인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셋째, 사건현장에서 얻어진 경험을 정기적인 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분석·토의 발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여, 검시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00년 3월 17일 창립한 법의감식연구회 소속의 경찰관과 법의학자의 노력으로 일부사건에 법의학자들이 공동입장을 하여 변사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³¹⁾ 법의학자 공동입장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충분한 예산의 지원과 법령의 보완을 통해 제도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醫大 法醫學教室에 變死體 剖檢 分配

우리나라 의료법은 변사 또는 변사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경찰

31) 법의감식연구회, 법의학자 공동입장(共同臨場)을 통한 검시제도 개선방향 모색, 2002. 10. 22. 행자부 주관 "제1회 공무원연구모임 발전대회" 발표 논문 <http://www.csi.or.kr/forum/medical=1&block=1&key=&keyfield=&uid=14>

에 신고하고, 사법경찰관직무규칙은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안한 의사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사건 현장조사나 검시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의학 교육은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장차 검시 업무를 수행할 예비 후보인 의과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과대학 법의학교수는 성범죄, 교통사고, 폭행 피해자 등 생체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처리할 기회가 없어서 단지 과거의 경험·지식으로 밖에는 달리 교육할 방법이 없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 수준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 실무에 접했을 때 올바른 법의학적 판정을 기대할 수 없다. 법의학 전문 의사는 사건의 현장과 사망자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분석·평가하여 총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된다.

그러므로 법의학교실과 전담 법의학교수를 두고 있는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변사체 부검이 분배되어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의학 교육을 위한 ‘법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警察公醫 또는 保健所 醫師를 檢視에 活用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대부분 법医学을 전공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검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망의 종류를 관련 법규로 규정하더라도 그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과 ‘의료법’을 개정하여 법医学을 전공한 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검시·검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³²⁾ 이렇게 함으로써 초동 수사에서부터 오류에 빠지는 위험을 막고, 법의학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전문적인 소

32) 의료법(제24조)과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34조(검시의 주의사항) ③항은 전공에 관계없이 의사면 누구든지 검안하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견을 근거로 수사 책임자가 법의 부검의 시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의병리 전문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법의관은 18명, 공중보건의 9명을 포함하면 모두 27명이다. 법의학교실이 개설되어 있는 7개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수는 10명(법의혈청학자 1명 포함) 뿐이다. 따라서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할 때까지는 현재 각 경찰서에서 검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의³³⁾ 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1~2년간 집중적으로 법의학 실무·이론 교육을 실시하고,³⁴⁾ 그 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에게 변사체의 검시·검안을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檢視關與者에 대한 法醫學 敎育 深化 및 變死現場搜查指針書 製作

법의전문의를 검시책임자로 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현제도하에서 시급한 조치는 검시를 담당하는 검사 및 검시를 대행하는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검사로 임관되면서 그 실무수습교육시에 몇시간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매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법의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에 의한 법의학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³⁵⁾

타살, 자살, 사고사, 산업재해에 따른 죽음, 보험과 관련된 죽음, 전염병이나 식품위생에 관련된 죽음 등 모든 변사 사건의 현장에 감식·수사 경찰관은 임장하여 감식과 검시 업무를 수행한다. 법의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경찰관은 초기에 정확한 검시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의학적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것이다. 일본의 형사조사관은 감식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으로 일정기간 법의학 전반에 대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33) 전국 경찰서에서 경찰공의로 임명된 의사는 234명이며, 이들은 모두 임상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다.

34)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중 정규직 의사에게 법의학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35) 안원식,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대검찰청, 1993. 5, 138-139면.

제일선에서 변사체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 입회하는 의사 또는 검찰의의 의견을 듣고 사법 해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에 대비하여 경찰청은 형사조사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³⁶⁾

또한 모든 사건에서 경험이 있는 수사관이 사건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집한 정보와 증거가 수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³⁷⁾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법무부 범죄현장수사기술실무팀(Technical Working Group on Crime Scene Investigation)이 만든 ‘현장수사관련 법집행 지침서(Scene Investigation; Guide for Law Enforcement)³⁸⁾와 같이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적으로 현장감식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현장을 보존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기 위한 「변사 현장수사지침서」를 만들고 현장감식요원과 수사관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5) 檢視豫算의 充分한 確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교수 촉탁예산을 확보하여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부검실시 기관이 부검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³⁹⁾ 따라서 수사기관은 부검 관련 예산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확보하고, 전담 법의학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신속한 부검이 이뤄지도록 변사체 부검을 법의학교실에 적절히 분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업무 집중으로 인한 부검지연을 해소해 나가고, 비현실적인 검안·부검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반의사들의 통상 수입을 감안하여 법의전문의를 길을 가는데 있어서 그 권위와 생활이 일반의사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법의전문의가 되는 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예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6) 경찰청은 2005년도부터 변사조사관 18명 정원을 확보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 운용할 계획이다.

37) 이윤성, 현장감식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0, 73면.

38) Technical Working Group on Crime Scene Investigation : Scene Investigation, Guide for Law Enforcement, Forensic Science Communications 2000 ; <http://www.fbi.gov/programs/lab/fsc/backissu/april2000/index.htm>.

39) 이문호, 앞의 논문, 46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의과대학에 일정 수의 법의학 전공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법의학 교육을 위한 '법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과 검시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檢視關聯 機構 및 制度 新設

(1) 檢視制度 改善委員會 構成

미국에서는 1925년에 검시관제도 및 법의관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조사연구위원회(The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설립되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고,⁴⁰⁾ 1954년 의과대학장, 법과대학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 Uniform State Law에서 '부검법(Model Postmortem Examination Act)'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었다. 대륙법 검시제도를 시행하는 스코틀랜드의 예를 들더라도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4년 대검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 1976년에 1) 정부는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자금을 대학에 제공하고, 2) 각 대학은 검사에게 적절한 법의병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사인규명을 위한 시체안치소와 부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Bowen- McCluskey 보고서⁴¹⁾를 발표하여 1979년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오늘날과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듯이 한국도 이제는 검시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국가의학인 법 의학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및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⁴²⁾

40) 박의우, 문국진. 각국 법의제도의 역사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1983, 3-10면.

41) Pounder DJ. : Law and forensic medicine in Scotland. Am J Forensic Med Pathol. 1993 : 14(4); 340-349면.

42) 임규옥 외, 앞의 논문, 26-27면.

(2) 圈域別 法醫鑑定機關 設立

1954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법의학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소를 설립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의학감정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의학감정기관’의 업무가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한 검사, 보험 업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학적 판정, 교통사고 생존 피해자 등 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서비스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체계와 관계없이 검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별 법의학감정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미법계열 국가에서는 법의관 사무소(예 : 미국) 또는 검시관 사무소(예 : 영국)가 법의학감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대륙법 계열 국가 중 스코틀랜드와 독일은 지역 의과대학 내에 있는 법의학 연구소를 ‘지역 법의학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시 업무를 전담시키며, 시설 및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 인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또는 대학이 없는 지역은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법의학감정기관’을 설치하여 검시업무, 임상법의학적 업무 및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법의학감정기관’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업무는 거의 유사하여,

- ①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체의 검안을 책임지며, 그 검안 소견과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경찰에 제시하고, 검사의 부검 시행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 ②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의 부검을 시행하며, 그 감정서를 작성한다.
- ③ 유가족에 대한 상담, 성폭력, 자동차 사고 상담, 아동학대, 노인병에 대한 법률적 상담, 기타 법률에 관련한 증거물 채취 및 의학적 판정 등의 임상 법의학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④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항공기 사고, 지진, 대량의 화재 등 대량 재해 발생 시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및 사인확인을 담당한다.
- ⑤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법의학 교육을 담당하고,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임상 법의학적 연구

를 수행한다.

- ⑥ 경찰과 수사 공조체제를 갖고 범죄 현장 조사에서 법의학·법과학적 문제 등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각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법의감정기관’의 특징은 의과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체계적으로 법의학 교육과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법의학적 문제의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부산, 대전, 광주 지역에 ‘권역별 법의감정기관’ 형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권의 검시 및 과학수사 감정 업무를 담당할 동부 분소를 개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즉, 본소 및 분소)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과 연계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법의학을 전공할 인력을 양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수사에서 요구되는 법과학 전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권역별 법의감정기관’이 의과대학과 연계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즉,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은 검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부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은 이미 대학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법의감정기관’을 설립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므로 국가는 ‘권역별 감정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과 행정 지원만 부담하면 된다.⁴³⁾

(3) 司法檢視爲主制度에서 行政檢視于先制度로 轉換

장기적으로는 법의전문의 양성체제와 사인규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법검시위주제도에서 행정검시우선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등의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가능하고(의료법 제18조) 부검은 의사,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해부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검 의사의 자격을

43) 황적준, 앞의 보고서, 40-42면.

규정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검을 할 수가 있으므로 검사나 법원이 누구에게 부검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공권력이 개입된 사망사건의 경우 항상 그 공정성에 시비가 있었다. 검사의 주체는 검사(형사소송법 제 222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고 실무는 의사가, 변사체 부검의 허부(許否)는 법원이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휘, 집행, 실무, 부검 여부 결정이 분산되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각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정도의 노력밖에 기울이지 않아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학에 전공한 의사가 태부족이고, 그것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있어 지방 오지에서 변사체가 발생된 경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사가 검안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부검 여부가 비전문가인 검사, 경찰관, 일반의사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체의 경우도 부검을 하지 않고 단순한 변사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감찰의제도(監察醫制度)를 도입하여 감찰의(監察醫)의 검안을 통하여 사법해부·행정해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한 강력검사의 제언⁴⁴⁾과 같이 검사업무가 전문적으로 신속, 정확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훈련된 법의전문자에게 검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전담검시제의 채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檢視制度의 法的 改善

(1) 刑事訴訟法 - 變死概念 · 檢視對象 具體化 및 剖檢關聯 令狀制度 改善

현행법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죽음이 범죄와 관련 있는 죽음인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따라서 특히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은폐

44) 안원식, 앞의 논문, 140면.

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검시하여야 할 죽음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 檢視하여야 할 죽음의 種類를 法律로 規定

영국의 잉글랜드나 웨일즈는, 죽음에 대한 조사를 검시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시관법⁴⁵⁾에 의하여 ①폭력이나 외인사로 인한 죽음, ②원인불상으로 급사한 경우, ③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사망하는 경우 등을 적시하여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출생과사망등록에관한법’에 의하면 사망등록소는 병사를 사인으로 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된 경우에도 ①사망당시에 의사가 진료하지 않았던 경우의 죽음, ②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와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사망자의 사후에 또는 사망 전 14일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죽음, ③사인이 불명인 경우의 죽음, ④외인사로 믿어지는 이유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유기, 유산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죽음, ⑤수술 중 또는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죽음, ⑥업무상재해이거나 업무로 인한 중독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죽음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시관에게 보고하여 죽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검시관이나 법의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죽음의 종류로 ①범죄와 관련된 모든 죽음, ②사고사, ③자살, ④평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⑤임종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 ⑥교도소 및 구치소내 사망, ⑦경찰연행과 관련된 사망, ⑧사망상황에 의심이 가는 경우, ⑨인공유산, ⑩중독사, ⑪공공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⑫근무 중 사망 등을 주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 또는 수장을 하는 경우는 시체가 소실되는 관계로 검시관이나 법의관에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장 또는 수장 전에 또 한 차례의 죽음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였다.⁴⁶⁾

스코틀랜드는, 검안은 모든 의사의 의무이고, 명백한 병사 이외의 모든

45) Dean P. : Death and its investigation. in Clinical forensic medicine. Derek Virtue, Datanet. ed. MeMclay WDS. 1996. 271-286면.

46) 플로리다 주법, Chapter 406 Medical examiners, Florida state, USA.

외인사의 의심이 있는 죽음은 변사체로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변사체에 대하여는 검사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조사대상 죽음의 종류⁴⁷⁾를 명시하고 이를 조사할 검사의 법률적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경찰자문의 또는 법의학자의 검안 소견과 부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여 부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며, 부검의 필요할 경우 2인의 병리의사에게 부검을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네덜란드 역시, 법률⁴⁸⁾에 의하여 폭력등 범죄에 의한 죽음, 사고사, 자살 뿐 아니라 외견상 건강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의사의 진료없이 발생한 죽음, 교도소 내에서의 죽음, 기타 의심이 있는 모든 죽음의 경우를 법의병리전문의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⁴⁹⁾에도 자살, 타살, 사고사, 급사, 사망 후 발견된 경우, 산업병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및 과실사, 감옥 및 이와 유사한 폐쇄된 수용기관 내에서의 죽음 등 사인을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신고 받은 경찰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Odense 대학, Aarhus 대학, Kopenhagen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부검을 행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법의학회에서 감찰의의 검안이 필요한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⁵⁰⁾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의사, 질식사, 경부 압박 질식사, 교통사고사, 추락사, 폭발물 관련 죽음, 압사, 그 외 손상, 중독사, 저체온사, 화재사, 전기감전사, 혹은 이러한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 외인사의 경우. 기아와 정신적 흥분, 외상의 합병증, 의료과오와 관련된 죽음 또는 이러한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의 죽음, ②병사의 경우이지만 임상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임상경과가 빨리 진행된 경우의 죽음, 질병의 발생 상황이 비전형적인 경우의 죽음, 의구심이 드는 죽음, 감염성 질환 및 임상 진단없는 식중독으로 인한

47) Dean P, 앞의 논문, 271-286면.

48) 대한법의학회. 앞의 보고서, 17면.

49) Voigt J. : The teaching of forensic medicine in Denmark, Med Sci & Law, 1984, 70면.

50) 박의우. 일본의 검시제도, 대한법의학회지 제16권 제2호, 1992, 68-71면.

죽음. ③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질병과 관련없거나 원인불명의 의학적 상태로 인한 죽음, ④외인에 의한 죽음인지 기존질환에 의한 죽음인지가 불확실한 죽음, ⑤고의, 무지, 과실에 의한 죽음 혹은 이러한 의심이 드는 죽음, ⑥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의 경우 등이다.

그 외에도 교도소에서 사망한 경우나 직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게 된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판사 앞에서 죽음에 대하여 공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외 급사의 의심이 있는 죽음이나 기타 사망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죽음 또는 공공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죽음의 경우에도 공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장이나 매장 등에 의하여 진실이 묻혀지지 않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검시관, 법의관, 및 검사 등의 어느 한 직책을 맡은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검시가 누락되고 범죄가 은폐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즉, 검시관, 법의관, 및 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의 소지가 있는 일정한 유형의 죽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드시 신고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은 우리 검시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의 변사자검시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사 역시 법의학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경찰로부터 보고 되거나 직접 접한 변사사건이 검시를 필요로 하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검시하여야 할 죽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과 무관하게 반드시 검시를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變死體 剖檢에 대한 令狀制度 改善

범죄혐의 유무를 중심으로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검시체계에 있어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의뢰가 부검감정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의 모든 변사사건에 대하여 영장이 청구되고 또 대부분 특별한 검토과정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는 현재

의 관행은 절차상의 요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여 정작 부검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하여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⁵¹⁾

증거물이나 몰수대상물의 수집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검증은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나, 수사실무상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보다는 동의의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이 더 많고,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도 순수한 수색의 필요에서보다는 압수를 목적으로 하는 영장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변사체의 부검을 위한 영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제도는 매우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마저도 제기된다.⁵²⁾

또한 최근 들어 범죄와 관련없는 직업병·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보상이나 배상을 둘러싸고 사인규명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감에 따라 이를 위한 부검의뢰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고, 범죄혐의가 전혀 없는 사망에 있어서도 사인규명을 원하는 유족 측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상의 절차를 따른 사법해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시간을 알기 위해 사망자의 사망시각을 밝혀달라는 사유의 부검요청 사례마저도 있다. 과연 이러한 사례에까지도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한 부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낭비이자 부검의 진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 등의 ‘부검요청서’ 내지는 ‘부검동의서’로 영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醫療法 - 變死概念・檢案對象 具體化, 法醫官에게 檢案資格 附與

범죄로 인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죽음은 물론 부자연하면서도

51) 김윤신, 변사체 부검을 위한 영장제도에 관한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5권 제1호, 2001, 7면.

52) 이문재, 미국의 수색영장제도와 우리제도의 발전방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제156호, 1989, 74-78면.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의 유형들, 예를 들면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범죄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죽음, 집단 수용시설에서의 죽음, 관련인에 의하여 사망원인이 은폐될 우려가 있는 죽음, 산업현장에서의 죽음 등은 관련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24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변사체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의 ‘변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의사 등은 자신이 검안한 시체가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따라서 검시를 하여야 할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변사신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의사는 시체를 검안하여 ① 사인이 불명인 죽음, ② 범죄행위 등 폭력에 관련된 죽음, ③ 외상 및 외부원인에 의한 죽음, ④ 중독사고, ⑤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죽음, ⑥ 병원에서 시술 중 사망한 경우, ⑦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군대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 ⑧ 입양아의 죽음 기타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신고가 강제되고, 반드시 죽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유형의 죽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반드시 신고되고 검시를 하도록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⁵³⁾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검시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이 검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변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의사도 검안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3) 임규옥,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30면.

(3) 葬事等에關한法律 - 火葬·埋葬 節次 具體化 및 要件 強化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화장 또는 매장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사체를 화장 또는 매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의료법, 사법경찰관직무규칙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관련된 죽음이 신고 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사가 행해지지 않을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범죄로 인한 죽음이 병사로 허위신고 되고 따라서 검사가 행해지지 않은 채 화장 또는 매장 신고 되어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화장 또는 매장이 행해진다면 범죄와 함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으며 따라서 비록 병사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정한 유형의 죽음에 대하여는 화장 또는 매장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어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화장 또는 매장신고 된 시체로서 의사가 명백한 병사로 판단하여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① 사망당시에 의사가 진료하지 않았던 경우의 죽음, ②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와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사망자의 사후에 또는 사망 전 14일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죽음, ③ 사인이 불명인 경우의 죽음, ④ 외인사로 믿어지는 이유가 있는 경우, 폭력이나 유기, 유산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죽음, ⑤ 수술 중 또는 마취에서 회복되기 전에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죽음, ⑥ 업무상재해이거나 업무로 인한 중독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죽음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⁵⁴⁾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휘를 받아 검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장할 경우에는 매장과 달리 시체가 소실되어 더 이상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점이 범죄은폐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화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화장절차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화

54) 어떠한 유형의 죽음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으로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은폐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⁵⁵⁾

(4) 戶籍法 - 死亡申告節次 改善

호적법 제87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신고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1개월 후는 이미 화장 또는 매장이 끝난 뒤이며 이 기간은 시체의 변질, 변형이 심각하여 검시를 하더라도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즉, 사망 후 1개월이 지나 범죄관련성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검시를 통한 사망원인의 규명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확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매장되기 전인 3일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망신고 접수 시 제출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확인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⁵⁶⁾

(5) 司法警察官職務規則 - 變死概念 및 檢視對象 具體化

사법경찰관직무규칙 제33조는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명에 의하여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의료법 제24조에 의하여 의사가 변사자로 신고한 시체에 대하여는 물론 그 외의 경로로 접수된 변사사건에 대하여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법의학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조항 중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의료법 제24조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에게 변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⁵⁷⁾

55) 임규옥, 앞의 논문, 31-33면.

56) 임규옥, 앞의 논문, 33면.

57) 임규옥, 앞의 논문, 30-31면.

4. 法醫學 教育 및 法醫學者 養成體系 改善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검시인력을 단순수치로 비교하여 볼 때, 약 250만 인구의 미국 San Diego County에 법의관(Medical Examiner)이 7명(Fellow Pathologist 제외), 법의조사관(Medical Examiner Investigator)이 15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는 검시 전문가가 약150명, 법의조사관이 약 300명 필요하다.⁵⁸⁾

그러나,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는 10명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27명이다. 이와 같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상적인 검시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1) 法醫學 教育시스템 擴充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전문적으로 맡을 법의병리 전문의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실무를 맡을 수 있는 법의학교실이 설치된 전국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수는 10명이 고작이며, 소수의 병리학교수가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27명⁵⁹⁾이 전부이다.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설치하여 교육과 연구가 동반되지 않으면 완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 국립대학에서라도 법의학교실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며, 적정 수의 교수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과대학 인정 평가 항목에 법의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의학교수는 실제적 법의학 실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법의 부검에 참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8)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 50면.

59) 총 27명 중 법의관은 18명(국과수 서울본소 11명, 부산분소 2명, 중부분소 3명, 서부분소 2명), 공중보건과는 9명(국과수 서울본소 3명, 부산분소 2명, 중부분소 2명, 서부분소 2명)이다.

법의학은 중요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의학의 다른 비임상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의학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소위 말하는 시체를 취급하는 추한 일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의 지급과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정의를 위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전문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法醫病理 專門醫’ 制度 導入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4년간 해부병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해부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 후 해부병리 전문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검사 관련 기관에서 1~2년간 검사·부검 업무를 수행하면 관례적으로 법의학 전공 의사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학교육 연계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인정하는 검사(檢視) 관련 기관에서 1~2년간 법의병리학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하여야 ‘법의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의관(medical examiner)으로서 검사·부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유럽 법의학회’ (European Council of Legal Medicine)가 1999년에 ‘법의학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취지문에 ① 사건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조사와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② 모든 법의병리학적 기술과 법의학적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식, ③ 과학적이고 논리적 견해와 결론으로 권위 있는 검사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 한하여 ‘법의학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의학 전공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검사·부검 업무를 담당할 법의학 전공 의사의 인력 수급은 수련 중인 해부병리학 전공의(resident)의 수에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40명 중 단 1명만이 현재 법의학 수련과정 중에 있다. 한편 2003년도 전국 41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종합병원에서 해부병리학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1년차 전공의는 모두 18명이며,⁶⁰⁾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인 2007년에 각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종합병원

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병리 전문의(專門醫)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력이다. 법의학 전공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법의학 전공 의사의 인력 수급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의 도입은 서둘러야 한다.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의 도입에 앞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법의학 교실이 개설된 7개 의과대학이 법의 부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시체가 곧 법의학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고, ‘법의학 교육프로그램’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는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다.⁶¹⁾

5. 現場鑑識分野의 專門化

미국 경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O. W. Wilson은 1950년 경찰학의 고전이 된 그의 저서 ‘Police Administration’에서 범죄감식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증거를 활용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감식전문가(evidence technician)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⁶²⁾ 즉,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시체에 대한 검시에 관여하는 감식요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사망자의 현장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감식을 전담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강도 높은 법의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⁶³⁾ 현장감식요원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 만큼 감식전문 수사관

60) 대한병원협회 2003년도 전공의 현황 자료에 의함.

61)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의 장점은 의과대학 졸업 후 곧바로 법의병리 수련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부병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62) 표창원, 영미 과학수사제도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0, 90면.

63) 이와 관련하여 하태훈 교수는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경과의 관계, 흥대논총 제30집, 1998, 21면”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관계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감정능력 등을 무기로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표창원 교수는 “영미 과학수사제도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0, 95면”에서 “정부, 정치권, 의·과하계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듯이 향후 경찰은 과학수사역량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수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상의 개선, 채용 및 선발방법에 있어서의 개선, 그리고 감식관련 교육과 훈련과정의 개선이 절실하다.

(1) 勤務與件 改善

현장감식요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첨단수사장비를 확충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을 마련하는 등의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고, 보직과 인사승진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한다. 즉, 이들에게 자격수당과 함께 일정기간동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승진과정에서 우대되는 등의 인사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오로지 감식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수사지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와 같이 감식분야의 교육을 마친 수사관에게 사회에서 능력과 직무숙련도를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퇴직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사경과제’의 정착을 통해 순환보직으로 한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이 장기간 감식분야에 전념하여 과학수사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수한 감식요원들이 자신이 하는 수사업무에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는 보직과 승진체계를 확립하여 주어야 한다.

(2) 科學搜查分野 專攻者에 대한 特別採用制度의 導入

현장감식 수사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수사경찰을 지원하고 이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경험축적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⁶⁴⁾

미국의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범죄현장조사관(Crime Scene Investigator) 또는 증거회득기술자(Evidence Recovery Technician)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채취에서부터 증거자료 분석 및 법정증거제출의 준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에 따라

64) 이황우,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43면.

경찰관이 담당하기도 하고 민간인전문가가 담당하기도 한다. 범죄현장조사관이나 증거획득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법과학 또는 형사사법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기본 컴퓨터 과정, 사진 및 스케치과정 이수가 기본 조건이다. 대학의 법과학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무능력은 채용 후 경찰내에서의 실습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채용 후 경찰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과 실습훈련을 받는데 이 기간동안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경찰에서의 채용 후 교육은 범죄현장출동, 증거채취, 감식 사진촬영, 살인 또는 변사 현장조사(homicide and death scene investigation) 등의 구체적인 실무기법 강의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는 범죄현장수사관(Scene of Crime Officer) 또는 현장조사관(Scene Examiner)이 이들에 해당한다. 증거수집 및 분석전문가로 지문과 DNA샘플을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기술과 전문 장비사용에 대한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과 특채된 민간 감식전문가로 경찰서 단위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의 감식과 또는 과학수사지원과(Identification Bureau or Scientific Support Department)에서 근무한다. 총 2만8천명의 경찰관과 1만4천명의 민간인직원을 보유한 런던수도경찰청의 경우 범죄현장조사국(Scene of Crime Branch)에 200명의 감식전문가와 현장조사관이 있어 런던전역의 범죄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⁶⁵⁾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982년에 수사요원 임용규정이 제정된 후에 수사요원의 자격을 경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수사요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가, 1987년에 수사요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졸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가능케 되었으나 이 규정도 인사권자의 인식부족과 인사질서의 혼란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⁶⁶⁾ 즉, 수사요원을 임용할 때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엄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 독일과는 달리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구

65) 표창원, 앞의 논문, 91면.

66) 이기호·양문승,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6, 76면.

분해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찰관으로서 선발된 후에 본인의 지원 또는 차출에 의해서 수사경찰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수사경찰관들 중의 62%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90%정도인 초대졸 이상의 신입경찰관들 중의 대다수가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전공자인 상황에서 현장감식요원을 선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과학수사분야에 대한 대학전공자가 반드시 성공적인 현장감식요원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만일 현재의 채용제도로 현장감식분야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이러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공자를 현장감식요원으로 특채하고 퇴직을 할 때까지 이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수사경찰관의 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처럼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하여 선발, 교육, 보직, 그리고 승진체계를 달리 하는 ‘수사경과제’를 정착시키고, 더 세분화하여 현장감식요원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장감식분야 전문수사관의 경우에 전문지식을 쌓고 현장실무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적성에도 맞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과학수사분야 전공자를 현장감식요원으로 특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敎育과 訓練課程의 改善

현장감식분야의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은 훌륭한 수사자질을 갖춘 자에게 충실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1967년에 발표된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특별전문위원회보고서(Task Force Report)에서는⁶⁷⁾ “개인적인 소질에 관계없이 인간은 홀로 타고난 능력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개인적 능력, 사전교육, 판단력, 그리고 감정적 적합성은 별도로 치고 경찰관들은 경찰업

67)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 Task Force Report, The Police, 1967,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37면.

무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배우기 전에 포괄적인 직무상의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⁶⁸⁾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문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범죄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의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해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장감식분야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교육과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의 확대 등의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1) 現場鑑識 搜查實習室의 擴散 및 委託教育 擴大

현장감식분야 전문직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의 일방적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양방향적, 현장중심의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일선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감식 수사실습실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실습실의 교육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첨단수사장비로 개선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만지고 실습을 해봄으로써 감식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수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경찰내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만일, 경찰에 적절한 실습시설과 기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수사분야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학수사대학원 등 관련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2) 檢視制度 發展을 위한 인터넷同好會活動 活性化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범죄사건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과학수사분야 전문수사관들이 모두 직접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공유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과학수사분야의 전문수사관들을 위해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

68) 이황우, 경찰행정학(제3판), 법문사, 2002, 321-322면.

인 방안은 과학수사분야의 전문교육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터넷동호회를 결성하게 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의담당 교수요원도 참여하여 실무현장의 수사경찰관에게 감식 기법과 증거수집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자신도 범죄현장의 살아있는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업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동호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반에서 법의학자들과 수사실무자들 사이의 이해증진과 협력모색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의감식연구회’의 활동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⁶⁹⁾

3) 現場鑑識分野 警察官의 再教育 및 職務專門教育 強化

우리나라에서 현장감식분야 경찰관의 교육을 포함하여 경찰교육의 부실로 인한 전문성 약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재교육 및 감식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범죄현장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감식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상의 배려와 혜택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경찰청 감식국(Division of Forensic Services and Identification)의 경우, 주 경찰청 뿐만 아니라 주 내의 모든 범집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무료로 범죄현장 조사 및 감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7명의 경찰관 및 감식전문가로 이루어진 범죄현장 조사과(The Bureau of Crime Scene Services)는 기동력을 갖춘 범죄현장조사 전문가와 장비를 24시간 365일 상비해 놓고 있다. 범죄현장 조사관(crime scene technician)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구두시험을 거쳐 채용된 후 1년간의 수습기간동안 720시간의 실무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관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 조사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체험을 하고 발령지로 배치된 후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선임 조사관(mentor)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여야 한다. 정식 범죄현장 조사관이 된 후에는 FBI 등 전문 감식학교에서 혈흔, 화재현장 감식, 사체(死體) 감식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⁷⁰⁾ 이는 우리 현

69)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smpa.go.kr/invpodori/invfla03.html>) 참조.

70) 런던경찰청 홈페이지(The London Metropolitan Police, <http://www.met.police.uk>) 참조.

장감식분야 수사관에 대한 실무교육에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도 변사사건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입장하는 현장감식분야 경찰관에게 일정한 소양과 법의학 과정을 이수케 하여 소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변사사건의 검시조사만 평생의 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IV. 결 론

법치국가의 사명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해 국가적인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어야 하며, 그 죽음에 대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가려내어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조사가 필요한 죽음이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될 우려가 있고, 조사가 행해지더라도 검시 관여자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관계로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의료계·국회와 정부는 앞서 언급한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심사숙고와 상응한 조치를 하여 “사회적 권력구조에서 우위를 점한 법조계는 막연히 검사의 지휘권을 고수하려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인 의료계는 법의학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죽은 자는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문제를 방치한다. □□는 비난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즉, 현행 검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확·신속히 검시하고, 타살인 경우 범죄행위의 재구성,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가해자의 각종 증거를 효율적 수집함으로써, 범죄자의 조기 검거와 많은 수사상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만의 하나 억울한 죽음을 남기지 않기 위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參考文獻]

I. 國內文獻

1. 單行本

- 이황우, 경찰행정학(제3판), 법문사, 200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2
범죄분석, 경찰청, 2001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2001
의과대학교육현황(제12집),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200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보고서 1차 1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2. 論文 및 研究報告書

- 강신몽,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 수사연구, 1996. 8
강신몽, 검시제도의 의학적 검토, 인권과 정의 244호, 1996. 12.
김윤신, 변사체 부검을 위한 영장제도에 관한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5권 제1호, 2001
김재선, 검시제도에 관한 연구-사법검시를 중심으로-. 배제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의우·문국진, 각국 법의제도의 역사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1983
박의우, 일본의 검시제도, 대한법의학회지 제16권 제2호, 1992
백형순, 우리나라 검시행정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안원식,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대검찰청, 1993. 5
온대중, 초동수사에 관한 연구 -변사사건을 중심으로-, 전투발전, 육군교육사령부, 1998
이기호·양문승,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6
이문재, 미국의 수색영장제도와 우리제도의 발전방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제156호, 1989
이문호,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 검찰, 대검찰청, 2000.12
이윤성, 현장감식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0
이황우,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임규옥,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임규옥 외,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 경북대 의과대학 법의

학과 교실, 2003

표창원, 영미 과학수사제도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0

하태훈,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경과의 관계, 홍대 논총 제30집, 1998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

황적준,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II. 外國文獻

Dean P : Death and its investigation. in Clinical forensic medicine. Derek Virtue, Datanet. ed. MeMclay WDS, 1996

Pounder DJ : Law and forensic medicine in Scotland. Am J Forensic Med Pathol, 1993

Voigt J : The teaching of forensic medicine in Denmark, Med Sci & Law, 1984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 Task Force Report, The Police,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III. 言論報道 및 Website

검시제도의 법적 검토, 법률신문 2564호, 법률신문사, 1997. 1

‘국과수 현장검안’ 경찰이 막아, 경향신문, 2004. 2. 19

‘듀스’ 멤버 살해혐의, 김○○씨 무죄 확정, 조선일보, 1998. 2. 26.

‘듀스’ 김○○ 사건 개요-쟁점 약물치사량-사망시각이 열쇠, 조선일보, 1996. 11. 7

‘죽음의 알리바이를 푼다.’ 한국일보 2004. 4. 30

<http://www.met.police.uk>(런던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fbi.gov/programs/lab/fsc/backissu/april2000/index.htm>(미연방법죄수사국 홈페이지)

<http://org.catholic.or.kr/chrc/summary.htm>(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http://org.catholic.or.kr/chrc/qunda/examiner/htm>(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http://org.catholic.or.kr/chrc/default0.htm>(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http://www.sppo.go.kr/jsp/act/Act0303.js>(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csi.or.kr/forum/medical/read.html?page=1&block=1&key=&keyfield=&uid=14>(법의감식연구회 홈페이지)